

세무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년 6월 pp.9~44
한국세무학회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윤승준** · 박종일*** · 정영기**** · 최 관*****

<요 약>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구한 다음 만약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상장기업과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선택가능한 대안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관련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각각 대안을 선택한 이유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의 6개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와 관련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공인회계사와 회계정책/감독기관의 경우 75%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상장기업은 57%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은 40% 정도만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여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네 가지 방안 중 (나)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52.5%로 가장 많았고, (다)안[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간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2007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세무회계저널 편집위원인 전규안 교수(충실대)가 논문접수 및 심사절차를 담당하여 게재확정된 논문임.

** 한양여자대학 세무회계과 전임강사, sjyoon@hywoman.ac.kr, 02-2290-2311, 주저자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parkjil@chungbuk.ac.kr, 043-261-3380, 교신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ungyk57@hotmail.com, 02-320-1739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wanchoi@skku.edu, 02-760-0503

논문접수일 2009년 9월

1차수정일 2010년 2월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소화] 31.1%, (개)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 11.5%, 그리고 (태)안[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선택적 대안

I. 서 론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 3월 15일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¹⁾과 함께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허용되며, 주권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회계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을 기업회계기준 전문에 천명해 놓고 있다.

비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될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개별 기업의 규모나 경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해당 기업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2007년 12월말 현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수는 18,000여개로서 이 가운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1,752개와 이들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을 제외하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의 수가 거의 13,000개에 이른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이와 같이 많은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현안이 아닐 수 없다.

1)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의 마련을 위하여 2006년 2월에 발족하였다. 동 준비단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회계학회, 증권선물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 등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관련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적용될 회계기준이 달라야 하는지 여부와 달라야 한다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어떠한 대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는 (가)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 (나)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다)안[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고 간소화시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라)안[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대상자는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로서 총 6개 집단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6개 집단에서 총 64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62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별로 공인회계사가 193부(30.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신용평가기관 127부(20.4%), 과세관청 113부(18.1%), 회계정책/감독기관 89부(14.3%), 비상장기업 69부(11.1%), 그리고 교수 33부(5.3%)의 순이다.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와 관련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회계정책/감독기관의 경우 75%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상장기업은 57%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나)안이 52.5%로 가장 많았고, (다)안이 31.1%, (가)안이 11.5%, 그리고 (라)안이 4.8%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 중 (가)안과 (나)안을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으로 볼 수 있고, (다)안을 “K-GAAP을 유지하는 축”으로, 그리고 (라)안을 “K-비상장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는 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의하면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가)안+(나)안]이 전체 응답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I 장의 서론과 연구배경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 III 장에는 설문조사방법을 기술하고, 제 IV 장에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에 사용한 설문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²⁾

2) 실제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문항이 여러 개 추가되어 있다. 첨부된 설문지는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만을 축약한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설문내용

1.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의 설정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로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범위결정기준을 알아본 연구(한진수 등 2007 ; 정영기 · 조현우 2007), 비상장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수요를 알아본 연구(박성배 · 김완희 1998 ; 2000 ; 강내철 · 최순재 2001),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가 자산총계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배길수 · 노준화 2001), 비상장기업의 회계실태를 조사한 연구(한진수 · 이점영 2004 등),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검토한 연구(최종서 · 황인태 2007 ; 2008) 등이 있다.³⁾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최종서 · 황인태(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적 사항으로 세 가지 연구주제를 다루었는데 첫째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배경과 기준제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둘째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실태를 표본조사하여 현행기준의 실효성 검토, 그리고 셋째는 IFRS for SME의 제정경위와 공개초안 시안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있다.

〈표 1〉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대안

		현 행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거래소상장		K-GAAP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코스닥상장							
금감위	대기업		K-GAAP	K-GAAP	K-GAAP	비상장 기준서	비상장 기준서
등록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례		
금융 회사	대기업				K-GAAP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례		
기타	대기업				K-GAAP		
외감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례	중소기업특례	중소기업특례	중소기업특례		

(주) 최종서 등(2007).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 요약표 참조.

3)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다룬 연구는 많으나 본 연구주제와 같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거래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외에도 금감위등록법인, 금융회사 및 기타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회계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표 1>과 같이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2. 설문내용

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질문한 다음, ‘예’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가 ‘예’라고 답하는 경우는 향후 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비상장기업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각각의 설문항목은 항목별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1)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예/아니오)
- (2) (동일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구체적으로 설문에 이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②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⁴⁾
- ③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④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때 회계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⁵⁾
- ⑥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4)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이 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를 ‘목적적 합성’이나 ‘검증가능성’ 또는 ‘객관성’ 등으로 나타낼 경우 설문응답자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질적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5)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포함시켰다.

나.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예/아니오)”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답하도록 하였으며,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각각의 설문항목은 항목별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이용된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②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③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회계정보)는 그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⁶⁾
- ④ 비상장기업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⑤ 비상장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서이다.
- ⑥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이 상장기업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 ⑦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면 어떤 특성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설문항목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의 특성상 앞의 설문항목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으며,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이용된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①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② 신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③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④ 상장기업과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서로 높아야 한다.
- ⑤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⁷⁾
- ⑥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6) 상장기업의 재무보고는 주로 외부의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는 외부의 채권자나 신용평가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보이용자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7) ‘질적 향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계정보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나타낼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질적 향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⑦ 쉽고 간편해야 한다.
- ⑧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⑨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⑩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⑪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실제로 제정하게 될 경우 다음에 제시한 네 가지 대안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방안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3)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 (가)안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
- (나)안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를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 (다)안 :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고 간소화시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라)안 :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III. 설문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월 14일의 기간에 이루어졌다.⁸⁾ 설문조사대상자는 총 6개 집단 즉,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의 재무분석가, 과세관청의 공무원, 회계정책/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또는 회계정책관련 업무담당자, 회계학 교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대상집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장기업⁹⁾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비상장외부감사대상기업
- (2) 공인회계사¹⁰⁾ : Big 4 회계법인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8)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회계연구위원회, 한국회계학회, 중부지방국세청, Big 4 회계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도움을 받았다.

9) 비상장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이번 설문조사의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설문대상에 포함하였다.

10)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며,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 집단

- (3) 금융/신용평가기관¹¹⁾ :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담당자, 한국신용평가(주)의 기업분석업무 담당자
- (4) 과세관청¹²⁾ :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의 중소기업관련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 (5) 회계정책/감독기관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회계제도관련 담당공무원, 금융감독원의 회계 및 감리업무 담당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업무 담당자와 연구위원
- (6) 교수 :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설문조사결과 6개 집단에서 총 64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62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집단별로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 수는 공인회계사가 193부로 가장 많아 전체의 30.9%를 차지하였고, 금융/신용평가기관이 127부로 20.4%, 과세관청이 113부로 1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계정책/감독기관과 비상장기업은 각각 89부와 69부로 구성비는 각각 14.3%와 11.1%이며, 교수는 33부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은 설문내용의 성격상 많은 경우 응답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응답자가 속한 조직 또는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설문조사결과 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집단별 설문지 회수현황

구 분	내 용	응답자수(주)	구성비(%)
비상장기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	69	11.1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193	30.9
금융/신용평가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평가기관, 기타	127	20.4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113	18.1
회계정책/감독기관	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89	14.3
교수	대학교	33	5.3
합 계		624	100.0

(주)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는 제외한 숫자임.

은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 11)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대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며, 신용평가기관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위험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을 결정하므로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된다.
- 12) 과세관청은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그룹이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가분석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사대상집단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은 별도의 부표로 제시하였다.

- (1) 비상장기업 : 상장 여부, 중소기업 여부, 회계담당부서 유무, 연결종속회사 여부, 연결지배회사 여부, 감사인, 업종, 총자산, 종업원 수,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설문응답자의 업무
- (2) 공인회계사 : 소속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및 업무
- (3) 금융/신용평가기관 :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비상장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업종,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 (4) 과세관청 : 비상장기업 세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법인세 업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소득세 업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 (5) 회계정책/감독기관 :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할 경험 유무,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 (6) 교수 : 전공, 회계학 과목을 강의한 기간

IV.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1.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표 3>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59.8%가 ‘달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40.2%가 ‘동일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 3>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구 분	전 체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동일해야 한다	251 (40.2)	30 (43.5)	49 (25.4)	75 (59.0)	67 (59.3)	20 (22.5)	10 (30.3)
달라야 한다	373 (59.8)	39 (56.5)	144 (74.6)	52 (40.9)	46 (40.7)	69 (77.5)	23 (69.7)
응답자수(명)	624	69	193	127	113	89	33

(주) 괄호안은 각 집단에서의 구성비(%)를 나타냄.

조사대상집단별로 보면 ‘달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회계정책/감독기관(77.5%), 공인회계사(74.6%), 교수(69.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융/신용평가기관과 과세관청 집단에서는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상장기업의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의 경우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구분하여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은 물론 이원화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번거로움이 가중되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기업 재무정보의 주된 이용자로 볼 수 있는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적합성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측정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항목은 모든 집단의 평균점수가 4.3점 이상으로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상장기업/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성의 크기

설 문 내 용	전 체	비상장 기업	공인 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비교가능성	4.5	4.3	4.5	4.4	4.3	4.5	4.7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4.0	4.0	3.7	4.1	4.2	4.1	4.1
국제적 정합성	3.7	3.7	3.6	3.8	4.0	3.6	3.8
회계투명성	4.2	4.1	4.0	4.2	4.4	4.1	4.3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때 회계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	4.0	4.1	4.0	3.9	4.2	4.0	4.1
응답자수(명)	251	30	49	75	67	20	10

(주) 설문응답에 따라 일부 누락이 있으며, 문항에 따라 최소 237명에서 최대 24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0점으로 나타났으며, 공인회계사가 3.7점으로 최소점수를 보인 반면, 나머지 집단은 모두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7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관청(4.0점)을 제외하면 모두 4.0점 이하의 평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4.2점으로서 설문조사대상인 6개 집단 모두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때 회계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0점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신용평가기관(3.9점)을 제외하면 모두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로서 전반적으로 비교가능성과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달라야 하는 이유

<표 5>는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적합성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적합성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는데 응답자들은 ‘회계처리 비용의 절감’,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장기업/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성의 크기

설 문 내 용	전 체	비상장 기업	공인 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회계처리 비용 절감	4.1	3.9	4.3	4.0	3.5	4.3	4.3
채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함	2.6	3.0	2.2	2.7	2.9	2.4	2.5
회계정보의 사용목적이 다름	3.5	3.7	3.4	3.2	3.6	3.6	3.7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함	4.2	4.4	4.3	4.1	4.2	4.2	4.3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음	3.9	4.1	4.1	3.7	3.4	4.1	3.9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 부족	4.1	3.7	4.4	4.2	4.1	4.1	4.0
응답자수(명)	373	39	144	52	46	69	23

(주) 설문응답에 따라 일부 누락이 있으며, 문항에 따라 최소 358명에서 최대 36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구체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1점이었는데 과세관청(3.5점)과 비상장기업(3.9점)이 4.0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나머지 4개 집단은 4.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기업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2점이며, 6개 집단 모두 4점을 넘어선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이 상장기업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의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1점으로, 비상장기업이 3.7점으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5개 집단은 모두 4.0점 이상의 결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2.6점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공인회계사, 회계정책/감독기관이 각각 2.2점과 2.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회계정보)는 그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5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별로 평점이 3.2~3.7점의 점수를 보여 전체적으로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상장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서라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9점이고,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회계정책/감독기관은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2.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10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질문대상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로 한정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을, “매우 중요하다”에 5점을 부여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쉽고 간편해야 한다’,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는데 6개 집단 모두 평점 3.0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4.1점으로 나타났고, 과세관청(3.9점)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4.0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투자자의사결정보다는 신용의사결정 측면에서의 유용성 향상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의 크기

설 문 내 용	전 체	비상장 기업	공인 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3.3	3.3	3.3	3.7	3.2	3.2	3.0
신용의사결정에 도움	4.1	4.1	4.1	4.2	3.9	4.1	4.2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4.0	4.2	4.0	4.1	4.1	4.0	3.8
상장기업과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	3.2	3.1	2.9	3.4	3.4	3.2	3.2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	3.6	3.8	3.4	3.9	3.7	3.6	3.4
회계투명성 향상	3.9	4.1	3.8	4.0	4.0	3.9	3.7
쉽고 간편	4.2	4.2	4.3	4.2	4.2	4.1	4.3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	3.4	3.9	2.9	3.5	3.8	2.9	3.3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비용 절감	4.1	4.1	4.1	4.1	4.0	4.1	4.5
국제적 정합성	3.0	2.9	2.7	3.2	3.3	3.0	2.7
응답자수(명)	373	39	144	52	46	69	23

(주) 설문응답에 따라 일부 누락이 있으며, 문항에 따라 최소 361명에서 최대 36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0점이며,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4.0점을 상회하였다. 상장기업과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공인회계사가 가장 낮은 2.9점을 보였다.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6점이다.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9점인데 공인회계사(3.8점), 회계정책/감독기관(3.9점), 교수(3.7점)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고, 비상장기업,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은 4.0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4.2점으로서 6개 집단 모두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4점이며, 비상장기업이 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세법과의 일치를 통하여 회계처리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실무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4.1점으로 6개 집단 모두 4.0점 이상이 었다.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3.0점이며, 과세관청의 3.3점과 금융/신용평가기관 3.2점을 제외하면 모두 3.0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

는데 이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서 국제적 정합성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

본 설문조사에서는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가)안부터 (매)안까지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이중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한 선호도

대안	설 문 내 용	전체	비상장 기업	공인 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 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을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	43 (11.5)	4 (10.2)	21 (14.6)	2 (3.8)	3 (6.5)	13 (18.8)	0 (0)
(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196 (52.5)	17 (43.6)	71 (49.3)	30 (57.7)	23 (50.0)	40 (58.0)	15 (65.2)
(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116 (31.1)	18 (46.1)	41 (28.5)	18 (34.6)	18 (39.1)	14 (20.3)	7 (30.4)
(라)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18 (4.8)	0 (0)	11 (7.6)	2 (3.8)	2 (4.3)	2 (2.9)	1 (4.3)
(마)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응답자수(명)		373	39	144	52	46	69	23

(주) 괄호안은 각 집단에서의 구성비(%)를 나타냄.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373명 중 196명이 (내)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52.5%이다. 그 다음으로 116명이 (배)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31.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개)안을 선호한 응답자는 4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1.5%를 차지하였고, (태)안은 18명으로 4.8%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응답의 성실성을 체크¹³⁾하기 위해 제시한 (매)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를 조사대상집단별로 살펴보면,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 집단이 (내)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내)안 18명, (배)안 17명으로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5개 집단과는 다르게 (내)안의 선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내)안에 대해 조사대상집단별로 응답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장기업은 응답자 39명 중 17명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43.6%의 비율을 보였고, 공인회계사는 응답자 144명 중 71명으로 49.3%, 금융/신용평가기관은 응답자 52명 중 30명으로 57.7%, 과세관청은 응답자 46명 중 23명으로 50.0%, 회계정책/감독기관은 응답자 69명 중 40명으로 나타나 58.0%, 그리고 교수는 응답자 23명 중 15명이 선택하여 65.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안 중 (개)안과 (내)안을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으로, (배)안을 “K-GAAP을 유지하는 축”으로, (태)안을 “K-비상장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는 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면 64%의 응답자가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K-GAAP을 유지하는 축”은 31.1%, “K-비상장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는 축”은 4.8%의 응답자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에 속하는 (개)안과 (내)안을 비교하면 (내)안이 (개)안에 비하여 4.6배(=196/43)나 되므로,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응답자라도 IFRS for SME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보다는 IFRS for SME를 번역하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방안과 K-GAAP을 유지하는 방안 사이의 선호도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비상장기업이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비상장기업이라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준거기준

13)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매)안을 선택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므로 설문응답의 성실성을 체크할 수 있다.

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된다면 이를 위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IFRS for SME의 구체적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표 3>과 같이 재무제표작성자인 비상장기업의 전체 응답자 중 43.5%는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6.5%는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경우 동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결국 비상장기업도 상장기업의 준거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포함시켜 해석한다면 전체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이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정도는 <표 7>에 나타난 비율(53.8%)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가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비상장종속회사일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한 최근 동향의 인지정도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된 최근동향에 관하여 응답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해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모른다”에 1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에 5점을 부여하여 상대적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상장기업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4.0점으로 나타났으며, 공인회계사, 회계정책/감독기관 및 교수의 경우 평점이 4.5점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3.3점으로 가장 낮았고, 비상장기업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이 3.7점으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14) 비상장기업 69명의 응답자 중 상장기업의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30명의 응답자에 대해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에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네 가지 대안 (가), (나), (다), (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가)안과 (나)안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를 상장기업의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답한 3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와 합한다면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에서 전체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이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정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지를 회수한 비상장기업 수가 전체 비상장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이상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비상장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속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8〉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한 최근 동향의 인지정도

설 문 내 용	전 체	비상장 기업	공인 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1)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여 상장기업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	4.0	3.7	4.5	3.7	3.3	4.5	4.5
(2)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다.	3.3	2.9	3.7	2.7	2.5	4.0	4.0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할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됨을 알고 있다.	3.0	2.5	3.5	2.5	2.3	3.7	3.6
응답자수(명)	624	69	193	127	113	89	33

(주) 설문응답에 따라 일부 누락이 있으며, 문항에 따라 최소 613명에서 최대 6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정책/감독기관과 교수는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인회계사로서 3.7점이었다. 과세관청은 2.5점으로 가장 낮았고, 비상장기업이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은 각각 2.9점과 2.7점으로 이들 집단은 3점 미만의 낮은 평점을 보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할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 문항 중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집단별 평균점수는 공인회계사, 회계정책/감독기관 및 교수가 3.0점 이상이며, 비상장기업,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이 2.5점 이하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교수, 그리고 회계정책/감독기관은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추가분석

앞에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강건성과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몇 가지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경우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대안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즉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에 답한 응답자를 3점을 기준으로 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를 구분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대안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3점 이상의 응답자는 (내)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즉 전체 응답자 중 52.5%가 (내)안을 선호하였다. 그 다음이 (대)안으로 전체 응답자 중 30.5%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3점 미만의 응답자도 (내)안이 가장 높았고, (대)안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서 3점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9>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계획의 인지도에 따른 대안별 선호도

질문 :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패널 A : 위의 질문에 ‘3점’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의 선호도

대안	전체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
(가)	34 (12%)	4	19	1	1	9	0
(나)	148 (52.5%)	10	61	16	10	37	14
(다)	86 (30.5%)	10	33	13	10	13	7
(라)	14 (4.9%)	0	9	1	1	2	1
(마)	0 (0%)	0	0	0	0	0	0
응답자수(명)	282	24	122	31	22	61	22

패널 B : 위의 질문에 ‘3점’ 미만으로 답한 응답자의 선호도

대안	전체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
(가)	9 (11.0%)	0	2	1	2	4	0
(나)	42 (51.2%)	6	8	13	11	3	1
(다)	27 (32.9%)	7	6	5	8	1	0
(라)	4 (4.9%)	0	2	1	1	0	0
(마)	0 (0%)	0	0	0	0	0	0
응답자수(명)	82	13	18	20	22	8	1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에서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및 회계정책/감독기관의 응답자 가운데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32명을 제외한 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즉,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교수 집단은 모두 회계관련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및 회계정책/감독기관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한 <표 7>에서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회계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후의 각 대안별 선호도

대안	전체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 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
(가)	40 (11.7%)	4	21	1	3	11	0
(나)	178 (52.1%)	17	71	25	17	33	15
(다)	106 (31.0%)	18	41	14	14	12	7
(라)	17 (4.9%)	0	11	2	2	1	1
(마)	0 (0%)	0	0	0	0	0	0
응답자수(명)	341	39	144	42	36	57	23

(주) 전체 응답자에서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및 회계정책/감독기관의 응답자 가운데 회계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였으며,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교수 집단은 모두 포함함.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 SME기준의 특징

본 설문조사 결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안 중 64%의 응답자가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응답자라도 IFRS for SME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보다는 IFRS for SME를 번역하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집단, 즉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으며,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따로 분리하여 심층분석한 경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IFRS for SME(이하 이 절에서는 ‘SME기준’이라 함)의 내용과 성격을 잘 이해하여 우리나라가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SME기준은 이용자의 요구 및 비용/효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IFRS의 단순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Full IFRS에서 다루고 있더라도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주제는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주당이익, 중간재무보고, 부문보고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둘째, Full IFRS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만을 반영하였다.

셋째, 인식과 측정기준을 단순화하였다.

넷째, 공시요구사항을 크게 축소하였는데 공시사항 점검표 상의 항목 수가 Full IFRS는 약 3,000개인데 비해 SME기준은 약 300개이다.

다섯째, 서술방법을 단순화하여 본문의 분량이 Full IFRS는 2,855쪽인데 비해 SME기준은 230쪽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SME기준은 공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상장기업, 비금융회사)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상장기업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Full IFRS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SME기준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계량화된 결정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SME기준 적용시 적절한 결정기준(계량화된 기준도 가능)을 정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록 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Full IFRS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¹⁵⁾

또한 SME기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준거기준으로서의 독립형(stand-alone) 기준¹⁶⁾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하고 완비된(self-contained) 회계기준이다. Full IFRS는 발표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SME기준은 주제별로 배열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SME기준의 본문은 총 230쪽이며, 그 밖에 결론도출근거, 재무제표의 양식사례, 공시사항

15) IASB는 회계기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공개초안 제정 당시에는 약 50인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규모의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상정하고, 이용자의 요구 및 그러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효익의 관점에서 IFRS를 단순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IASB가 종업원 50인을 SME의 결정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각국에 위임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기(2007. 12~2008. 1)에는 2007년 2월에 발표된 SME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그 후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09년 7월에는 SME기준이 최종 공표되었다. 최종 공표된 SME기준은 제정과정에서 당초의 공개초안에 비해 보다 완전한 독립형 기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점검표가 첨부되어 있다.

둘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Full IFRS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셋째, 이용자의 요구와 비용/효익의 관점에 기초하여 수정이 이루어졌다.

넷째, 투자자, 채권자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SME기준은 개정이 필요한 경우 3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SME기준이 이용자의 요구 및 비용/효익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을 단순화하고 있다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SME기준은 전체적인 성격상 여전히 Full IFRS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 비상장기업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부분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SME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 SME기준을 도입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정책 당국은 충분한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과 논의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부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여 이를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준거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회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의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도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기업회계기준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우선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을 구한 다음 만약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상장기업과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선택가능한 대안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각각 대안을 선택한 이유와 비상장

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에 대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의 6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회계기준 로드맵과 기업회계기준 전문에 언급되어 있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와 관련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회계정책/감독기관의 경우 75%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상장기업은 57%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금융/신용평가기관과 과세관청은 응답자의 60% 정도가 상장기업의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달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이유는 과세관청과 금융/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세금부과 및 금융/신용평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내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내안[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간소화] 31.1%, (개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 11.5%, 그리고 (태안[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 4.8%의 순이었다. 한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안 중 (개안과 (내안을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으로, (태안을 “K-GAAP을 유지하는 축”으로, (내안을 “K-비상장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는 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면 64%의 응답자가 “IFRS for SME를 지향하는 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K-GAAP을 유지하는 축”은 31.1%, “K-비상장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는 축”은 4.8%의 응답자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17)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09년 1월부터 세부 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기초안과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27일에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첫째,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유지, 둘째,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단순화, 셋째, 국제적 정합성의 고려라는 세 가지 작업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와 정합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재 (내안[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간소화]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개안[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SME기준을 번역하여 사용]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투자의사결정보다는 신용의사결정 측면에서의 유용성 향상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지향하는 바가 구별되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공인회계사, 교수, 그리고 회계정책/감독기관은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에 따라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체제가 이원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탐색하는 문제 외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으로서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령체계 운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2006년 말 현재 101개가 있는데 이들은 법령이나 정관에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각종 법규에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근거법규와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상장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비상장·외감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및 기타 : 일반기업회계기준(내용 자체는 IFRS for SME를 번역 또는 IFRS for SME를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에 맞추어 간소화시켜 회계부담을 경감)

즉 비상장·외감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목적의 회계기준으로서, 내용상으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라도 이를 포괄적으로 일반 “기업회계기준”으로 명명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준거기준으로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는 플랫폼을 두고, 특별히 상장회사와 같은 공개기업은 국제적 정합성 등을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례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관련 근거법규와 회계제도를 정비한다면 앞에서 제기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령체계 운용상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학이 실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장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분석을 수행한 본 논문은 회계제도 및 학문의 발전에 필요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된 네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어떠한 점을 중요시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대상으로 설정한 6개 집단(비상장기업, 공인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감독기관, 교수) 가운데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의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조사결과가 해당 집단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3,000개에 이르는 비상장기업 중 본 연구에서 조사한 기업의 수는 69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이해관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역할과 비중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좀 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69개 중 30개(43.5%)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9개(56.5%)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때 과연 기업의 전체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로부터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은 설문내용의 성격상 많은 경우 개별 응답자의 의견이라기보다 응답자가 속한 조직 또는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의 대체적인 입장을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철 · 최순재. 2001. “비상장기업의 외부감사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7권 : 133 - 157.
- 박성배 · 김완희. 1998. “비상장기업의 회계감사수요”, 회계정보연구 제10권 : 213 - 222.
- 박성배 · 김완희. 2000. “한 · 미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수요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권 제2호 : 354 - 377.
- 박성배 · 조동수. 2006. “비상장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3호 : 1 - 29.
- 배길수 · 노준화. 2001.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무화가 자산총계 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6권 제4호 : 109 - 133.
- 송인만 · 이창우 · 이갑재 · 남혜정.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모형 및 전략”,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 187 - 208.
- 송재근. 200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검토의견”,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심상규 · 허영빈. 2004. “중소기업의 회계시스템 정착방안”,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225 - 257.
- 정영기 · 조현우. 2007.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적절한가?”,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심포지움 발표논문.
- 최용호. 2005.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통합논의와 한국 중소기업의 과제”, 중소기업연구 제27권 제1호 : 219 - 242.
- 최종서. 200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검토”,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 최종서 · 황인태. 2008.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95 - 230.
- 최종서 · 황인태 · 강선민. 2007.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발표논문.
- 한진수 · 박재완 · 이점영. 2007.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범위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 한진수 · 이점영. 200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회계실태와 회계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의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259 - 288.
- 황인태 · 최종서. 2007.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after IFRS Adoption in Korea

- A Survey Study -

Seungjoon Yoon* · Jongil Park** · Youngkee Chung*** · Kwan Choi****

〈Abstract〉

The Roadmap toward IFRS Adoption in Korea proclaimed that listed companies would be permitted to apply the IFRS from 2009 and required from 2011, whereas unlisted companies would adopt some simpler and easier accounting standards than the IFRS to reduce accounting costs and burden. It is now a facing issue, if the unlisted companies adopt the IFRS, or use the existing K-GAAP, or make new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lternativ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and gets opinions from the interest groups for each alternative. Respondents are also demanded to answer what are the important things to be considered when we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We made a questionnaire and sent it to the six categories of interest group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5, 2007 to January 14, 2008. The six categories of interest group are unlisted companies,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sts, government tax officials, accounting regulatory agencies, and professors of accounting. We collected 640 questionnaires and used 624 of them in data analysis.

The summary of major findings is as follows.

We asked whether unlisted companies should adopt the IFRS or they need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373 respondents (59.8%) answered that unlisted companies should us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which can take the circumstances of Korean unlisted companies into consideration, whereas 251 respondents (40.2%) replied that unlisted companies should also use the IFRS. The respondents choosing th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nswer the questionnaire that cost reduction in accounting practices, adoption of simpler and easier accounting principles, and lack of competent accounting personnels in unlisted companies are the main reasons why they select the alternative.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Tax and Accounting, Hanyang Women's University, sjyoon@hywoman.ac.kr, primary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University, parkjil@chungbuk.ac.kr,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ongik University, jungyk57@hotmail.com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kwanchoi@skku.edu

We also asked the respondents who choose the different standards which accounting alternatives is more desirable for the unlisted companies.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IFRS for SME, including modification of it, has strong attraction (64.0%) for the accounting standards. 31.1% of the respondents chose simplifying the existing K-GAAP and only 4.8% chose establishing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This survey also asked whether we need to mak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sized unlisted companies because they usually do not have sufficient accounting infra-structures and competent accounting personnels. 59% of respondents answered "Yes" but 41% replied "No", indicating that singl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unlisted companies would be more desirable.

<Key words>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FRS for SME, K-GAAP, alternativ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부 록〉

〈부표 1〉 비상장기업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예	아니오	응답합계
우리회사는 상장기업이다				0	64	64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이다				66	2	68
우리회사는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				66	2	68
우리회사는 다른 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이다				37	30	67
우리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지배회사)이다				14	50	64
우리회사의 회계감사인인 Big 4(삼일, 삼정, 한영, 안진) 중의 하나이다				45	22	67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기타	응답합계
업종	28	12	0	4	23	67
구 분		50억~300억	300억~1,000억	1,000억~63,000억	응답합계	
기업총자산		17	19	28	64	
구 분		50명 미만	50명~300명	300명~6,000명	응답합계	
종업원수		17	30	20	67	
구 분		5명 미만	5명~10명	10명 이상	응답합계	
회계관련 종업원수		36	18	13	67	
구 분		영업·관리	회계·재무·경리	기타	응답합계	
설문응답자의 주된 업무		1	65	0	66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설문응답자의 근속연수		23	18	23	64	

〈부표 2〉 공인회계사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500명 이상	50명~500명	50명 미만	응답합계
소속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	113	39	35	188
구 분	회계감사	세무	경영진단	응답합계
주된 업무	173	24	7	189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감사인으로서의 근속연수	47	80	65	192

(주) 주된 업무의 경우는 중복응답을 포함함.

〈부표 3〉 금융/신용평가기관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예	아니오	응답합계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75	51	126
비상장기업에 대한 재무분석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100	26	126
구 분	은행	저축은행	신용평가기관	창투회사	기타	응답합계
업종	54	37	21	0	14	125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금융기관에 근무한 근속연수			28	22	68	118

〈부표 4〉 과세관청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예	아니오	응답합계
법인세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62	50	112
소득세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61	49	110
비상장기업 세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35	70	105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세무관련 업무에 근속한 근속연수			19	27	58	104

〈부표 5〉 회계정책/감독기관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예	아니오	응답합계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59	16	75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감독업무와 관련한 근속연수			48	6	6	60

〈부표 6〉 교수 집단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구 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기타	응답합계
교수의 전공분야	21	1	10	4	0	32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응답합계	
회계과목을 가르치신 기간		8	7	17	32	

(주) 전공분야의 경우 중복응답을 포함함.

〈설문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는 여러 가지 대체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을 좀더 단순화시킨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장기업 적용 국제회계기준과 일관성이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현행 기업회계기준(K - GAAP)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므로 이 기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회계기준을 제정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간편한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새 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이나 상장기업에 적용할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4. 국제회계기준(IFRS)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실 때의 유의사항>

1.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중소기업 포함)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 설문에서의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2. 본 설문은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기업은 본 설문에서의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설문응답자께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대체안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근 제정 중인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설문서의 7-8쪽을 참조하신 후에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I. 다음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관련된 설문문항입니다.

1.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답해 주십시오.

예 (동일해야 한다) () → 문항 2로 이동
아니오 (달라야 한다) () → 문항 3으로 이동

2. 회계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각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 모든 문항의 해당번호에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 능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때 회계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 |

* 문항 2에 답하신 분들은 설문 6으로 이동하셔서 (설문문항 3, 4, 5는 건너 뛴) 계속 응답하여 주십시오.

3.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1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각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 모든 문항의 해당번호에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회계정보)는 그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 ①—②—③—④—⑤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 비상장기업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비상장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서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이 상장기업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 |
-

4.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는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 모든 문항의 해당번호에 ‘√’).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
|---|-----------------------|---------|
| •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신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상장기업과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서로 높아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비상장기업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쉽고 간편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기타 (설문문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 |
-

5. 아래에 제시된 ‘가~마’까지의 5가지 대안들 중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안을 하나 선택하여 선호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대 안	설 명	선호안
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을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	()
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
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
라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
마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6.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아래의 각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여 상장 기업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 ← ①—②—③—④—⑤ →
- 우리나라에서 비상장기업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다. ← ①—②—③—④—⑤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할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됨을 알고 있다. ← ①—②—③—④—⑤ →

II. 응답하신 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 ☐ 다음 제시된 귀하의 일반사항들에 관하여 답해 주십시오.

- 소속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

☐ 500 명 이상 : ()

☐ 50명 ~ 500명 : ()

☐ 50명 미만 : ()

- 귀하의 주된 업무 :

회계감사 : () 세무 () 경영진단 ()

- 감사인으로서의 근속연수 : ()년

* 아래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의 장/단점과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에 관한 설명을 간략히 정리한 사항입니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상장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도 새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상장기업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외부 감사대상 기업을 의미합니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여러 기관이나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것들과 이들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

- (장점) 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음.
 ② IFRS for SME를 번역하면 되므로 제정이 용이하고 회계기준의 사회적 유지비용이 적게 듦.
- (단점) ① IFRS for SME의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준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② 상당 부분의 Full IFRS가 비상장기업에도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간소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IFRS for SME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②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를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 (장점) ①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와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음.
 ② IFRS for SME를 번역하여 수정하므로 제정이 비교적 용이하며 회계기준의 사회적 유지비용이 적게 듦.
- (단점) 여전히 많은 부분의 Full IFRS가 비상장기업에도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간소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③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고,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장점) ① 기업들이 익숙해져 있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므로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르는 비용이 크지 않음.
 ②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기준을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단점) ①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미완성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기업회계기준서를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회계기준 체계의 정비).
 ②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의 경우에도 상장기업과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예 : 재무제표의 종류와 구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③ 이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임. 또한 국제회계기준과는 별도의 회계기준 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사회적 유지비용이 증가됨.

④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 (장점)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기준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단점) ① 현행 기업회계기준이나 IFRS for SME와는 다른 별개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제정비용이 발생함.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정도의 수준(90 여개의 조문식)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제정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기준의 실무적 적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보완적인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함.
 ② 국제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기준을 제정하므로 사회적 유지비용이 증가됨.

⑤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비상장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장점) ① 상장기업의 재무정보와 높은 비교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사회적으로 회계기준의 추가적인 제정비용 및 유지비용이 들지 않음.
- (단점) 상장기업 국제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됨.

<참고 : IFRS for SM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이하 ‘SME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7년 공개초안(ED)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8년 하반기에 SME기준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SME기준은 공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상장기업, 비금융회사)에 적합하며, 약 50인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그러한 규모의 SME에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개초안(ED)에 나타난 SME기준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Full IFRS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 SME를 위한 단순하고 완비된(self-contained) 회계기준으로 주제별로 배열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 본문은 총 254쪽(38개의 Section)이며, 그 밖에 재무제표의 양식사례, 공시사항 checklist(80쪽)과 결론도출근거(48쪽)가 첨부되어 있다.
- SME기준은 생략된 주제에 대하여 Full IFRS에 대한 참조표시를 하고 있고 복잡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Full IFRS에 대한 참조표시를 하고 있다.